

제·개정일자	2024. 06. 28
작성부서	구매1·2팀

제 3 자 파트너 행동 규범

(Code of Conduct for Business Partners)

1. 개요

가. 행동 규범 제정 목적

(주)세아제강(이하 '세아제강')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라는 비전하에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전략 방향으로 설정한 ESG 전략(PROMISE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SG경영의 일환으로 당사의 공급자, 계약 상대방, 사업 상 관계에 있는 자 등 세아제강과 거래하는 다양한 제3자 파트너들과 함께 ESG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제3자 파트너 행동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행동 규범은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윤리 및 공정거래, 경영시스템 5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규범 및 기준과 법적 요구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제3자 파트너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세아제강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제3자 파트너 행동 규범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3자 파트너의 책임과 역할

세아제강의 제3자 파트너는 경영 의사 결정 및 사업 운영 과정에 있어 본 행동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하위 공급망에도 동등한 인권경영, 안전·보건, 환경 및 윤리 기준과 책임을 권고해야 합니다. 세아제강 및 세아제강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제3자 파트너가 본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습니다.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아제강은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를 통해 리스크 완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아제강의 제3자 파트너가 본 행동 규범에 명시된 의무 사항의 이행을 지체, 거절, 거부하거나 이에 위반된 행동을 하는 경우, 세아제강은 제3자 파트너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자 파트너는 본 행동 규범이 컴플라이언스의 기본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제3자 파트너는 관련 법규를 모두 인지하며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행동 규범과 관련 법규가 충돌하는 경우,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 행동 규범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 규범은 세아제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본 행동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본문

가. 환경

제3자 파트너는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 기준, 관련 법령, 내부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상시 반영해야 합니다.
- 2) 공정 변경, 원료 대체, 원료의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을 통해 오염 물질 발생량을 저감하고 자원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3)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취급·이동·저장·사용·재사용·재활용·폐기 과정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4) 사업장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을 반영한 배출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규제에 따라 적법하게 배출 및 보관해야 합니다.
- 5)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 뒤 배출해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확인해야 합니다.
- 6) 수자원 사용량 및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 및 관리하고, 수자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7)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산정·기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나. 노동·인권

제3자 파트너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제권리장전과 국제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기본 원칙과 권리에 대한 선언에 따른 것입니다. 이 원칙은 직접 고용 또는 리크루터 등을 통하여 고용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제3자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모든 근로는 자발적 근로로 행해져야 합니다. 강제 근로자, 인신구속계약에 따른 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하여서는 안되며, 노동력 착취 목적의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의 하여서는 안됩니다.
- 2) 아동 근로자를 고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아동이란 만 15세(현지, 자국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 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아동근로자들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 학업을 저해하는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 야간 근로를 수행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3) 근로 시간은 해당 국가의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무 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4)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 임금, 시간 외 수당, 복리 후생 등을 포함하며, 모든 임금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5) 근로자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희롱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6) 채용과정과 승진, 임금, 보상, 교육 기회 등의 고용 활동에 있어 인종·성별·나이·성정체성·노조 가입·장애·임신·민족·종교 등에 근거하여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다. 안전·보건

제3자 파트너는 소속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된 직장 내 위험과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3자 파트너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 업무환경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1) 안전 유해·위험 요소 제거, 안전한 공정 설계, 안전 규정 마련, 보호구 지급, 근무 환경 통제 등 안전 보건 개선,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2) 임신부, 연소자 등을 위험한 업무 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사회적 취약 근로자가 작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3)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를 파악하여 모니터링 실시, 대피 경로, 탈출 시설 등 비상조치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4) 산업 재해, 질병 예방·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대한 재해, 질병 발생 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5) 작업장의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를 파악 및 통제해야 합니다.
- 6) 작업장의 위험 설비를 분류하여 안전성 점검, 안전 보호구·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 7)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 준수,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라. 윤리 및 공정 거래

제3자 파트너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자 파트너는 어떠한 형태로든 직간접적인 공갈, 사기, 뇌물, 청탁금/급행료 또는 돈세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자 파트너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모든 사업 활동에서 뇌물 수수·횡령·부패 행위·부당 이익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며,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 2)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안되며,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합니다.
- 3)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회계장부 및 업무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3자 파트너는 노무, 안전·보건, 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 4) 모든 지적재산권은 존중 및 보호되어야 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5) 사업과 관련된 공급사·고객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6) 공정경쟁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7) 내부고발자의 신원보호 프로그램(비밀 및 익명성 보장)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8)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광물 및 원재료(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을 해야 하며, 불법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 등 반사회적 또는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마. 경영시스템

제3자 파트너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적, 법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수립·유지 및 개선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경영진이 승인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 성명서를 작업장에 게시하여 기업의 준수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 2) 경영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을 담당하는 책임자(실무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경영시스템의 현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 3) 기업 운영과 관련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공정거래 분야의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고,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 4) 본 행동규범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을 파악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 5) 제3자 파트너의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이행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자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 6) 임직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합니다.
- 7) 기업 운영상 보관되는 문서 및 기록의 작성 및 유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밀관리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8)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제3자 파트너에게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제3자 파트너의 준수 여부를 서약서, 설문 작성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며, 제3자 파트너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4. 06. 28. 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